

늘푸른연극제 운영(심사)규정



사단법인
한국연극협회

늘푸른연극제 운영 규정

2025. 02. 17. 일부개정

제1조 (명칭)

본 규정은 늘푸른연극제(이하 ‘본 사업’ 이라 한다)의 운영 규정이라 칭한다.

제2조 (목적)

본 사업은 연극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원로연극인들의 업적을 기리고 그들의 뛰어난 예술성을 후대에 전하고자 하는 공연예술축제이다. 이에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운영 규정을 제정, 시행한다.

제3조 (주최 및 주관)

본 사업은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(이하 ‘협회’ 라 한다)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최하고, 운영위원회가 주관한다.

제4조 (사업 개시)

본 사업은 예산의 확정과 동시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사업 시행 6개월 이전 모집 공고를 통해 개시한다.

제5조 (개최 장소 및 시기)

본 사업의 개최 장소는 늘푸른연극제 운영위원회가 정하며, 매년 8월경에 시행한다. 단, 개최 장소의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할 수 있다.

제6조 (조직위원회)

- ① 본 사업의 조직위원회는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연출, 배우, 극작, 기술, 기획, 평론 등 분야별 협회 이사와 홍보 및 법률 분야의 외부 전문가 등 총 9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② 조직위원장은 한국연극협회 이사장이 맡는다.
- ③ 조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
- ④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장이 선정하되, 이사회에 승인을 거친다.

제7조 (운영위원회)

- ① 본 사업의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인(조직위원장이 선임), 운영위원 4인(조직위원회에서 선임) 이내로 구성한다.
- ② 운영위원장은 예술감독을 겸한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본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한다.
- ④ 운영위원회는 아카이빙 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연을 운영한다.
- ⑤ 운영위원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.

제8조 (선정위원회)

- ① 본 사업의 선정위원회는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장이 선임한 1인과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연출, 배우, 극작, 평론 등 분야별 각 전문가로 총 5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② 선정위원장은 선정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.
- ③ 선정위원회는 본 사업의 공연 대상자를 선정한다.

제9조 (위원회 임기)

본 사업의 조직위원회, 운영위원회, 선정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연도 사업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.

제10조 (지원 자격)

- ① 본 사업은 (사)한국연극협회 정회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 (모집공고일 기준)
- ② 본 사업은 연 나이 70세 이상의 회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 (참가작품)

- ① 지원자는 과거 자신이 참여한 작품 중 한 작품을 정하여 공연단체와 함께 지원하여야 한다.
- ② 선정 후, 참가작품은 변경할 수 없다.

제12조 (선정 방법)

- ① 선정위원회는 지원자 및 제출한 작품과 공연계획서를 종합하여 심의한다.
- ② 선정 대상자는 배우 2인, 연출 1인, 극작 1인으로 한다. (단, 해당 분야 지원자가 없을 시 분야별 인원은 변경될 수 있다.)
- ③ 선정심사는 1차 서류 전형과 2차 심층 심사로 나누어 진행한다.
- ④ 아카이빙 공연 대상자의 선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결정한다.

제13조 (지원)

(사)한국연극협회는 선정인의 공연에 대해 다음 항을 지원한다. 단, 예산의 범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
① 공연장 대관 (기본 대관료)

※ 기본대관이란 셋업(종일 대관), 기본시설 이용, 철수 대관을 칭한다.

※ 기본대관을 제외한 추가 대관 및 유료 부대시설 비용은 참가단체가 부담한다.

② 공연 제작비 지원

③ 통합 홍보, 마케팅 지원

제14조 (기본 의무)

① 선정인과 참가단체는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대로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선정인과 참가단체는 개막식, 기자회견 등 본 사업의 부대행사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,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홍보, 마케팅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선정인과 참가단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.

④ 사고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참가 내용이 변경될 경우,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⑤ 제시된 사항 이외는 운영위원회에서 별칙으로 정한다.

제15조 (참가단체 및 작품의 제한)

본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다음 각 항의 경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.

① 제13조(기본 의무)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
② 본 사업의 품위를 훼손한 경우

③ 공연이 지적재산권(저작권)의 침해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16조 (수익의 배분)

공연 수익(수수료 제외)은 참가단체와 협회가 각각 50%의 지분을 갖는다. 단 각 단체에서 체결한 후원 계약에 대해서는 따로 협의할 수 있다.

제17조 (변경)

본 규정은 규정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, 한국연극협회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.

부 칙 ('2025. 02. 17.)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한국연극협회 이사회에서 인준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